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8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이성권 · 김기웅
엄태영 · 김상훈 · 강선영
진종오 · 구자근 · 서천호
권영진 · 이종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·어업·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,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·어업·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업·어업·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제1호는 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